

『이레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 안 이 유

- 대상지역은 도시 관리 계획상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되어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을 유도하고 있으나 현재 영세한 주택의 밀집으로 통풍, 일조 등 자연환경이 불량하고 도시계획도로의 미개설로 인하여 도로망 체계가 불합리하며
- 단위면적당 인구밀도가 높은 과밀 주거지로 형성되어 있으며 주택 구조상의 문제로 화재 및 재해위험이 증대되고 있음
- 따라서 주택 철거에 대한 도시영세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현지주민의 재정착을 유도하고자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1항에 의거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주택개량과 계획된 도로개설을 통하여 주거환경의 개선을 도모하고자함

3. 주 요 내 용

☐ 정비사업의 명칭 : 이레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

☐ 정비구역 및 면적

지정구분	구역의 명칭	위 치	면 적(m ²)	비 고
신 설	이레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	구미시 고아읍 이레리 339번지 일원	46,066	

□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

가. 도시계획시설(도로, 주차장, 공원) 결정

○ 도시계획시설(도로)결정 및 결정조서

구분	규 모				기능	연장 (m)	기점	종점	사용 형태	주요 경과지	최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				
기정	중로	1	51	20	보조 간선	2,994	대1-14 오로451-6	대3-40 관심691-5	일반 도로	-	경북고시 ³ (94.1.5)	
기정	중로	2	83	15	집산 도로	195	중1-51 이례산3-1	중2-82 이례325-5	일반 도로	-	경북고시 ³ (94.1.5)	
기정	소로	2	28	8	국지 도로	200	중1-51 이례리442	중1-53 이례리313-6	일반 도로	-	경북고시 ³ (94.1. 5)	
기정	소로	2	29	8	국지 도로	165	중1-53 이례489-4	중2-83 이례355	일반 도로	-	경북고시 ³ (94.1.5)	
기정	소로	2	30	8	국지 도로	205	중1-53 이례리427	중2-83 이례리342	일반 도로	-	경북고시 ³ (94.1.5)	

○ 도시계획시설(주차장)결정 및 결정조서

구분	도면 표시번호	시설명	위치	면적(m ²)	최초 결정일	비고
신설		노외 주차장	고아읍 이례리 387번지 외 1필	723		

○ 도시계획시설(공원)결정 및 결정조서

구분	도면 표시번호	시설 명	시설의 세분	위치	면적(m ²)	최초 결정일	비고
신설		공원	소공원	고아읍 이례리 442번지	196		

4. 참고사항

- 「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

5. 검토의견

- 본 의견제시의 건은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 규정에 의거 영세한 주택의 밀집으로 통풍, 일조 등 자연환경이 불량하고 도시계획 도로의 미개설로 인하여 도로망 체계가 불합리한 이레지구를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을 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으로

- 주택개량과 계획된 도로개설을 통하여 주거환경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현재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,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므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